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9030000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9.01.0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6.01.29.

<http://www.7thpizza.com>
accounting@7thpizza.com

7번가피자 정보공개서

(주)7번가사람들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7번가사람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 614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3, 3, 4층(창천동, 엠디빌딩)
 전화 : 02-702-7020
 팩스 : 02-702-7097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2-702-7020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7번가사람들	7번가피자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 614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0.03.10	2010.04.01	양명덕	02-702-7020	02-702-7097
	법인등록번호	180111-0707323	사업자등록번호	607-81-93686	

- 1) 1997년 1월 24일 "7번가피자" 상표 출원
- 2) 1997년 2월 3일 "7번가피자" 직영1호점 해운대점 오픈
- 3) 2002년 2월 1일 유진상사(7번가피자 가맹본부) 설립 후 피자도우 제조 및 유통 시스템 구축
- 4) 2010년 3월 10일 (주)와이제이상사로 가맹본부 법인 전환
- 5) 2010년 4월 1일 (주)와이제이상사로 가맹사업 개시
- 6) 2014년 4월 13일 (주)7번가사람들로 상호 변경
- 7) 2018년 2월 22일 이천에 현대식 도우공장 건축 후 본점 이전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양명덕	7번가피자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 61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양명덕	02-702-7020	02-702-709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양미자	7번가피자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 61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양명덕	02-702-7020	02-702-709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태명에프앤티	이천밥쌈 외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43, 코오롱사이언스밸리1차 제10층 제1011-5호(구로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양명덕	02-704-7773	02-6933-7772
			법인등록번호	120111-1109075	사업자등록번호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7번가피자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7번가피자	근본이 다른 7번가피자
상 호	7번가피자 00점	당사는 웰빙피자 전문점입니다.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0-0726501-0000 등록번호: 41-0046391-0000

< 기타 가맹본부를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

○ (주)7번가사람들은 7번가피자에 납품하는 어떠한 거래처에도 비합법적 금품을 수수하지 않으며, 좋은 제품과 좋은 금액이라면 누구나 납품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 (주)7번가사람들은 세무 행정의 정칙과 원칙을 준수하며, 또한 모든 가맹점사업자들도 가맹본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	4,995,918	1,263,629	3,732,289	7,008,939	74,787	137,803
2023	5,332,991	2,095,181	3,237,809	7,936,243	-579,501	-494,479
2024	3,743,321	2,958,547	784,773	6,852,029	-2,413,199	-2,453,035

○ 그 근거자료는 별지와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재무상황과 동일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양명덕	대표이사	2010.03.~현재	(주)7번가사람들 대표이사	업무총괄
		사내이사(대표자)	2021.11.~현재	(주)태명에프엔티 사내이사	업무총괄
	양미자	사내이사	2020.06.~현재	(주)7번가사람들 사내이사	운영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	27

○ 당사의 직원수는 직영점을 통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태명에프엔티	가맹사업경영	2023.05.18.~현재	이천밥쌈이라는 영업표지의 덮밥 전문점 경영(등록번호: 20171250)
			예정	차이나x4라는 영업표지의 중식 전문점 경영(등록번호: 20250244)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7번가피자	해당상표 및 특허를 가맹점운영권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2006.11.21 출원 2007.10.18 등록	출원 40-2006-0058993 등록 40-0726501-0000 (30류)	양명덕	2027.10.23. (2027.10.23.)
 7번가피자		2008.06.05 출원 2009.03.03 등록	출원 56-2008-0012728 등록 41-0046391-0000 (41, 35, 43류)	양명덕	2028.08.29. (2028.08.29.)
 7번가피자		1997.01.24 출원 1998.07.14 등록	출원 41-1997-0001084 등록 41-0046391-0000 (112류)	양명덕	2028.08.29. (2028.08.29.)

썸바사삭		2021.02.24. 출원 2022.07.28. 등록	출원 40-2021-0037979 등록 40-1893848-0000 (30류)	(주)7번가사람들	2032.07.28
-------------	--	----------------------------------	---	-----------	------------

○ 귀하는 당사가 공급하는 상품, 제품, 공급품(이하 '제품 등'이라고 한다.) 및 기타 점포 설비 등에 부착된 당사의 상호, 상표, 로고 등 당사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표지와 형상(이하 '상호 등'이라고 한다.)을 훼손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고, 이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귀하는 '상호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당사에게 책임을 부담케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귀하는 별도로 '상호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당사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사용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는 당사의 가맹점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상호 등'을 제3자가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혹은 이와 유사한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즉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7번가피자 가맹사업 현황

1. 7번가피자를 시작한 날 : 1997년 2월 3일

(상기 일자는 7번가피자 직영1호점인 해운대점의 영업을 개시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이며, 유진상사 가맹본부를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은 2002년 2월 1일임)

2. 7번가피자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유진상사	7번가피자	양명덕	2002.02.01~2010.03.31	부산시 동래구 안락로 125번길 38
(주)와이제이상사	7번가피자	양명덕	2010.03.10 ~ 2014.01.12	부산시 동래구 안락로 125번길 38
(주)7번가사람들	7번가피자	양명덕	2014.01.13.~2018.02.22	부산시 동래구 안락로 125번길 38
(주)7번가사람들	7번가피자	양명덕	2018.02.22~ 현재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 614

3. 7번가피자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7번가피자	피자	피자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7번가피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21	219	2	204	201	3	193	191	2
서울	25	24	1	21	19	2	18	16	2
부산	37	37	-	35	35	-	33	33	-
대구	17	17	-	15	15	-	9	9	-
인천	6	6	-	6	6	-	6	6	-
광주	18	18	-	17	17	-	16	16	-
대전	7	7	-	7	7	-	6	6	-
울산	6	6	-	6	6	-	5	5	-
세종	3	3	-	3	3	-	4	4	-
경기	28	27	1	23	22	1	25	25	-
강원	6	6	-	6	6	-	5	5	-
충북	4	4	-	4	4	-	4	4	-
충남	2	2	-	2	2	-	4	4	-
전북	5	5	-	5	5	-	4	4	-
전남	15	15	-	14	14	-	15	15	-
경북	9	9	-	9	9	-	8	8	-
경남	23	23	-	23	23	-	23	23	-
제주	10	10	-	8	8	-	8	8	-

5. 바로 전 3년간 7번가피자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228	6	0	15	16	219
2023	219	5	0	23	15	201
2024	201	8	0	18	14	191

6. 7번가피자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7번가피자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태명에프앤티 /양명덕	이천밥쌈	20171250	덮밥 전문점	-/-	13/1	13/1
		차이나x4	20250244	중식 전문점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7번가피자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바로 전 사업연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가맹점 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91	201,706	12,850	537,180	58,535	27,232	1,797	186개점 대상
서울	16	228,936	17,817	428,817	28,656	95,482	7,283	16개점 대상
부산	33	180,778	14,052	369,932	58,535	58,821	3,921	32개점 대상
대구	9	201,906	13,604	353,886	25,970	33,436	2,452	9개점 대상
인천	6	233,819	15,611	537,180	38,287	62,994	4,404	6개점 대상
광주	16	217,055	15,688	349,907	33,340	119,646	5,982	16개점 대상
대전	6	248,069	15,873	334,880	37,335	187,014	8,326	6개점 대상
울산	5	169,341	9,825	248,257	14,198	134,504	7,113	5개점 대상
세종	4	해당없음						5곳 미만
경기	25	202,851	14,572	505,506	33,099	27,232	1,797	25개점 대상
강원	5	165,396	7,056	184,963	10,682	134,048	5,763	5개점 대상
충북	4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4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4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남	15	201,272	10,066	366,554	28,268	68,157	2,474	14개점 대상
경북	8	193,164	9,923	443,978	18,678	77,204	3,084	8개점 대상
경남	23	171,803	10,573	439,511	31,823	60,793	2,683	23개점 대상
제주	8	244,744	11,142	443,850	21,857	103,546	2,721	8개점 대상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포스 매출확인 가능한 일부 점포는 포스 매출액 자료 반영)

$$*매출액 = (\text{당사가 가맹점에 1년간 공급한 도우공급액} + \text{로열티}) \times 11$$

○ 당사가 공급하는 제품공급가액(도우 및 로열티)이 차지하는 비율이 판매가에 1/11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한 것입니다.

○ 특히 바로 전 사업연도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바로 전 사업연도 기준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7번가피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191개	3,289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7번가피자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대전/충청 지사	대전/충청지사	대전시 유성구 노은로 157 골드프라자 109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인철	042-477-7772	18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	○	X	X	
부산/경남 지사	부산/경남지사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 3		
	대표자	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안창완	051-504-7777	6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	○	X	X	
광주/전라 지사	광주/전라지사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64, 1층(치평동)		
	대표자	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임홍재	062-374-7776	35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	○	X	X	

※ 관리가맹점 수는 2024년 말 기준

10. 광고·프로모션(판촉) 지출 내역

○ 당사에서 바로 전 사업연도에 7번가피자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프로모션(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및 프로모션(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본 정보공개서의 「V. 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프로모션 (판촉)		(비공개)	4,937,425	(비공개)	-	-
						
						
						

○ 2024년에 광고 및 판촉행사를 위해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은 887,301천원 입니다.

11. 가맹금 예치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및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충렬로지점 상품판매팀	부산 동래구 안락동 591-2	051-521-3804
농협은행	신촌중앙지점 수신팀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73 케이스퀘어빌딩 2층	02-325-2515
우리은행	신촌지점 기업팀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99	02-393-3929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에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일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귀하가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예치하는 방법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7번가사람들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7번가사람들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발급일로부터 2개월 또는 개점일 중 빠른 날	
보험금액	예치가맹금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IV. 1.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참조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7번가피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0				
가맹비	14,300	계약체결일로부터 1일 이내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계약금 성격의 금전으로 계약 체결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최초 교육비	2,200	계약체결일로부터 1일 이내	교육 전 계약해지 시	교육시작 후	

○ 개점 전 교육 기간 중 가맹점 직원들의 인건비는 가맹점사업자 부담입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계약 체결일	금전지급의무위반, 손해배상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9,500
가맹비	14,300
최초 교육비	2,20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3,000

○ 단, 당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경우 귀하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별도 가맹금 예치를 하지 않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일반형	고급형	일반형	고급형			
총계		58,800	66,000					49.5㎡(15평) 기준
인테리어	협력업체	22,500	29,700	1,500	1,980	계약 또는 물품입고 시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간판 등	협력업체	5,500	5,500					
주방기기(기물) 및 기타물품	가맹본부	30,800	30,800					
초도물품	협력업체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을 원할 경우 점포의 시설 착공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설설치 등 가맹본부의 디자인 도서(매뉴얼)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디자인 도서(매뉴얼)비는 3.3㎡ 인테리어비용의 합산금액의 10~15%(부가세 별도)입니다. 단, 지사(장)가 있는 지역의 경우 각 지사(장)에 디자인 도서(매뉴얼)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소방공사 및 완비, 전기증설 비용, 냉·난방, 화장실, 철거, 가스공사, 전면공사, 소품, 오토바이, 배달 통, 헬멧, 포스장비, 어닝, 외부닥트, 외부공사 등 기타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당사는 점포 선정과정에서 귀하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른 추가 발생비용은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신규교육을 이수한자	가맹사업이 가능한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휴게음식점 근무가능한자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닌 자로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건강할 것.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조건에 결 격사유가 없을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라지도우 개수 1,425원 및 레귤러도우 개수 1,035원의 합금액	매월		사용된 비용	신티도우 동일/ 1인용 도우 한시적 면제
광고 및 프로모션(판촉)비	가맹본부	가맹본부와 체결한 약정서 또는 동의서에 따름	매월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전	교육 후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미지정)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정해진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천원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 당사는 해당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등을 점검하고 가맹본부가 정한 규정 이외의 서비스 취급 여부, 서비스 상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가맹점의 위생, 재고관리,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등이나 기타 점포의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점포관리기준은 [별지3]의 “가맹점 평가 점검표”와 같으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점검 7일 전 변경된 기준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가맹비 등 당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관계는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유지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고 변경된 영업표지로 적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7번가피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당사로부터 승인받은 양수인은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소정의

최초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맹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지체 없이 당사의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귀하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귀하가 부담하고 당사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7번가피자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별지 참조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7번가피자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주)태명에프앤티	계열회사	피자소스외	7,930,516	2024년 기준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7번가피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계					2024년 기준

2) 당사가 7번가피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계						2024년 기준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프리미엄 스페셜	페스티벌피자, 새우파티피자, 샘스테이크피자, 체다골드포테이토, 7번가스페셜피자	기재된 제품 이외는 판매 불가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문의 : 당사 (02-702-7020)
프리미엄	멕시코칸타코피자, 흥부박포테이토피자, 칠리 크림볼갈비피자, 고구마피자			
오리지널	체다파인애플피자, 포테이토피자, 슈퍼콤비네이션피자, 불고기피자, 페페로니피자, 고르곤졸라피자, 치킨할라피노피자, 뉴더블치즈			
하프앤하프	프리미엄스페셜, 프리미엄 오리지널 피자 중 택2			
1인용	콤보치즈피자, 하와이안피자, 페페로니피자, 더블치즈피자, 고르곤졸라피자			
세트상품	파티박스, 피크닉박스			
사이드	오븐치즈떡볶이, 페페로니치즈떡볶이, 체다골드포테이토티떡볶이, 로제스파게티, 오븐스파게티, 콘길리에파스타, 케이준치킨텐더, 치킨바샤삭, 그릴닭다리살, 에그타르트, 골드멘보샤, 핫윙, 흑미크림찰치즈볼, 통통새우링, 콘샐러드, 피클,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갈릭디핑/스위트칠리/핫소스, 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지정 거래상대방에게 해당제품 판매 불가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p>7번가피자 1688-7887 방분포장 30~40%할인(매주 수요일 포장 40%할인) 000점 000-0000</p> <p>PREMIUM SPECIAL • 최고의 맛 프리미엄 스페셜 석식 ₩ 25,900 ₩ 32,500</p> <p>PREMIUM • 다양한 맛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피자 석식 ₩ 22,900 ₩ 29,900</p> <p>ORIGINAL • 깔끔하게 맛있는 오리지널 피자 석식 ₩ 20,900 ₩ 26,900</p> <p>Half & Half • 하프앤하프 피자 석식 ₩ 21,900 ₩ 27,900</p> <p>1인용 (반도우 전용) • 혼자 즐길 수 있는 1인용 피자 6,900</p> <p>SET BOX •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특별한 세트 메뉴</p> <p>사이드 / 추가메뉴 • 다양한 사이드 메뉴로 더 맛있게</p> <p>NEW(새) 품목은 별도 표시</p>			
		변경 시 문서로 통보	2025년 3월 기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피자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7번가피자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계약서 별첨에 따름	가맹계약서에 별첨에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재조정 등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 → 변경된 계약 조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및 계약 갱신	가맹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지역 변경 등 계약갱신 진행 후 신규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귀하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7번가피자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7번가피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98.1	1.9	0	0

○ 기타 오프라인 매출액은 직영점에서 발생한 매출액입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7번가피자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갱신계약기간은 매 1년으로 한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4조 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4조 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4조 1항
○ 7번가피자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4조 1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4조 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로열티, 광고 및 프로모션(판촉)비 포함),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 본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POS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 또는 가공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1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이 규정된 복장, 개·폐점시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또는 가맹본부의 신메뉴 개발에 따른 메뉴, 메뉴판 교체를 불이행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7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타 업종겸업 하거나 독자적인 제품개발과 타 상품, 제품 및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을 진열·판매하거나 상품, 제품의 판매가격을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임의로 책정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별첨 3](1. 구입강제품목 내역) 지정업체를 통하여 구매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경영지도에 따르지 않거나 경영지도의 결과 및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5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식재산권 사용 권리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7조 1항
○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경영지원, 전반적인 행사, 이벤트, 교육·훈련 등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고객의 불만사항에 관해 가맹본부의 시정조치를 받고, 시정을 게을리 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의 가맹점 점검 평가 등을 하기 위한 기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계약서상의 가맹점사업자의 일부 또는 전부의 권리를 가맹본부와 사전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한 경우	
○ 가맹점의 소재지를 당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메뉴를 무단으로 변경, 삭제, 추가, 훼손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고의로 침범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 또는 7번가피자 브랜드 이미지를 뚜렷이 훼손한 가맹점사업자가 제13조 제10항을 위반한 경우 - (13조 10항) 브랜드 이미지, 점포 통일성 또는 안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구조 변경, 외관·인테리어 변경, 간판 교체, 전기·가스 등 주요 설비 변경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5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5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5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 합의를 거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당사 (02-702-7020)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 채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소정의 최초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수인은 신규 가맹계약과 동일한 가맹비를 추가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에게 양도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약한 영업지역내에서 본 계약과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효력이 없으며, 당사는 귀하와의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운영권을 대리행사로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능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와 동일	교육수료 및 소정의 최초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대리행사	불가			
업무위탁	불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동안 귀하가 7번가피자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피자 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당사 (02-702-702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7번가피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시~22시30분	연중무휴(명절, 경조사 당일 휴무)	문의 : 운영팀 02-702-7020 영업시간이라 함은 고객의 주문이 가능한 시간을 말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무단으로 휴업할 수 없으나, 귀하가 부득이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당사에게 휴업개시 희망일 최소 7일 전까지 신청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고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근로관계 및 종업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귀하는 원활한 가맹점 운영을 위해 종업원을 관리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 부서	비고
위생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점검사항확인 → 점검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 시	가맹본부 및 지사	[별첨3] 가맹점 점검표
제품품질관리 매장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점검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 시	가맹본부 및 지사	
특별관리	암행감사 → 점검사항 확인 → 점검표 작성 → 사진 등 근거자료첨부 → 완료	수 시	가맹본부 및 지사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7번가피자 가맹점운영관리규정에 의한 품질, 서비스, 청결 및 위생, 브랜드 이미지 등의 준수 여부를 본사 및 슈퍼바이저가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검사 또는 감사보고서 제작을 위한 회계조사를 실시하며, 이에 가맹사업자는 해당 직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상기 검사를 시행하면서 업무상 필요한 사진 등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프로모션(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당사는 7번가피자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	가맹점		
광고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없음	-	-
	개별광고	없음	전액	-	-
	상품광고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사전동의 또는 사전약정 진행 시 부담비율 안내		광고계획 공고 →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동의 충족 또는 개별 약정 체결 → 분담금 지급	-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판촉행사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사전동의 또는 사전약정 진행 시 부담비율 안내		행사계획 공고 →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동의 충족(70%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 또는 개별 약정 체결 → 분담금 지급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을 받아 진행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프로모션(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수요일을잡아라, 7번가데이, 오리지널데이 포장 시 할인 등)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프로모션(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광고 및 프로모션(판촉)의 소모적인 낭비를 줄이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본부 또는 당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7번가피자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유튜브등 동영상포함)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외부 유출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40조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이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가맹점사업자 및 그 종업원이 영업상 비밀을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였을 경우 이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D-44~43	
점포개발 및 상권 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29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8	
예치가맹금 예치	- 당사지정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함	D-28~27 (1일) (계약일로부터 1일 이내)	
점포실측/설계	- 주방기기배치확정 - 인허가 및 신고투자비 산출	D-27~25 (3일)	
공사 착수 전 준비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장애물철거 - OPEN일자확정 - 사은품선정	D-24~22 (3일)	
실내외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간판 및 CIP 공사 - 홍보작업	D-21~8 (14일)	
주방집기류 설치 및 오픈행사준비	- 주방기기류 입고 및 설치 - 초도물량입고 - 오픈행사준비	D-8~2 (3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공사 기간 중)	D-10~1 (10일)	
영업시작	- 가맹점 영업개시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합의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p><분할지급 시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p>(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프로모션(판촉)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경영지도를 따를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에 불응해서는 안 됩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7번가피자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7번가피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교육	하단 표 참고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특별 교육	신메뉴 교육,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별도 공지	필요시

< 개점 교육 내용 >

일 자	교육과목	교육 및 실습내용	비 고
1일차~3일차	서비스 교육	○서비스교육 및 위생교육 - 전화응대 및 메뉴판 숙지 - 복장교육	신규 가맹점 영업 시작 전까지 필수교육과정이며 교육 진행은 각 지역 지사에서 교육함.
	기기 사용법	○기기 취급요령 - 냉장고 사용방법 (도우보관, 냉장온도) - 오픈기 사용방법 - 청소방법	
	토픽재료 및 식자재 준비	○매장영업전 준비작업 - 식자재 관리 - 도우관리	
4일차~6일차	매뉴얼교육 및 영업교육	○피자토픽교육(토픽순서 및 토픽량)	
		○도우 펴기	
		○소스 바르기	
		○메뉴별 재료토픽	
		○피자커팅	
	○포장요령		
전산교육	○주문방법, 백업관리, 고객관리 등		
안전교육	○오토바이, 가스안전등		
7일차~10일차	식자재 취급요령	○식자재 발주 및 취급요령	
	숙련도 및 오픈준비	○교육숙련도	
		○판매영업 실습	
		○가오픈 준비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7번가피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교육	10일	최초 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특별 교육	1일	실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신규교육 시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채용한 직원이 가맹본부가 정한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추가 교육을 받고 이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개점이 지연되는 경우 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가 기한 내 신규 교육 또는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공급중단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불참에 대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신촌마포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39, 1층(창천동)
2	서울	홍대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익로 15, 1층 일부(서교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2년 10개월(1,034일)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365,773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물류공급 추정금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2-702-702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2

< 원·부재료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주방기기 및 집기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3

< 가맹점 점검 평가표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